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전기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시키기 위해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기존 ‘30만 킬로와트 이하’에서 ‘50만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003호, 2022.10.18., 일부개정·시행)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은 법상 상한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별로 발전설비용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용량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사업자별 발전설비용량 상한 폐지(현행 제59조제1,2호 삭제)” 등

- 1)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의 발전설비용량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발전설비용량을 상한할 필요가 있음.”
- 2) 또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별로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를 구분하여 발전설비용량을 제한”한 문제점이 있음.

3)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법과 일치시킴에 따라 분산형전원과 구역전기사업자간 용량불일치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15. ~ 1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u>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u>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대한 특례) ----- 「 <u>집단에너지사업법</u> 」 제2조제3호에 <u>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u>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1. <삭 제>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 락 처	(044) 203 - 3927